

2025 세법학 II - ① 추록

2025년 7월 2일 발행
정정문 지음 / 상경사 출간

- 이 추록은 『세법학 II - ①』 제26판 1쇄에 적용되는 수정사항입니다.
- 이 추록은 출간 후 발견된 몇 가지 오류수정과 개정된 법령 등을 반영하였습니다.

I. 오류수정사항

P	행	종전의 내용	고침
237	上 12	신용카드매출전표 ^(※주1)	신용카드매출전표 ^(※주2)
345	下 12	400만원)를	관세 400만원)를
411	下 3	× 0.5	× 0.5%
550	上 6	(2024년 세무사 2차,	(2023년 세무사 2차,
567	上 3	<3행 아래 추가>	3. 가산세
617	上 12	(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말일부터	(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
668	上 3	p.654	p.670
719	上 9	= 8,130,280원	= 8,132,800원
727	上 5	p.711	p.728

II. 개정법령으로 인한 수정사항

1. 자동차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기간 연장

<개정내용> 자동차 소비 회복 지원을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‘2025년 6월 30일까지’에서 ‘2025년 12월 31일까지’로 연장하였다.

종전	개정
□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한시 인하(탄력세율) ○ 탄력세율 : 3.5%(기본세율은 5%) － 세율 조정에 따른 개별소비세 인하 한도 : 100만원 ○ 적용기간 : 2025.1.3.~2025.6.30.	□ 자동차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기간 연장 ○ 왼쪽과 같음 ○ 적용기간 : 2025.1.3.~2025.12.31.(6개월 연장)

<적용시기>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.

🕒 p.451 下 2~1행. 아래 내용으로 교체

* 자동차에 대한 탄력세율의 유효기간 : 2025.1.3.부터 2025.12.31.까지 효력을 갖는다.

● p.453 上 16~17행. 아래 내용으로 교체

과세물품(1호·2호·3호: 종가세 대상 과세물품)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(2025.1.3.부터 2025.12.31.까지 반출하는 승용차)에 ...

2. 유류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기간 연장 등

<개정내용> 유류비 및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기간을 연장·조정하였다.

종전	개정
☐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○ 2025.4.30.까지 킬로그램당 212원 ○ 2025.5.1.~2025.6.30. 킬로그램당 234원	☐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적용기간 연장] ○ (왼쪽과 같음) ○ 2025.7.1.~2025.8.31. 킬로그램당 234원
☐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○ 2022.8.1.~2025.6.30. 킬로그램당 10.2원	☐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기간 연장 ○ (왼쪽과 같음) ○ 2025.7.1.~2025.12.31.까지 킬로그램당 10.2원
☐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○ 2022.8.1.~2025.6.30. 순발열량에 따라 킬로그램당 41.6원, 39.1원, 36.5원	☐ 유연탄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기간 연장 등 ○ (왼쪽과 같음) ○ 2025.7.1.~2025.12.31.까지 순발열량에 관계없이 킬로그램당 39.1원

● p.452 上 2~3행. 아래 내용으로 교체

* 2025.7.1.~2025.8.31.까지는 킬로그램당 234원으로 한다.

● p.452 上 18~19행. 아래 내용으로 교체

2022.8.1.~2025.12.31.까지
킬로그램당 10.2원

● p.452 下 4~13행. 아래 내용으로 교체

자. 유연탄	• 2025.7.1.~2025.12.31.까지 킬로그램당 39.1원
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